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965-10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경기도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경기도

Contents

신산업

01 규제샌드박스로 이동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제공 가능 7

02 국산 자원을 활용한 비료 개발로 안전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생태 농업 구축 9

03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12

04 국민을 울리는 불법운행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 19

기업애로 해소

01 지식산업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가능 27

02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신설 제안 29

03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기준, 기업 편에 서서 잘못을 고치다 33

04 경기도 외투단지, 규제를 만들어 규제를 합리화하다! 34

05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 .. 37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생활불편 해소

01 공동주택 세대 누수공사금액 조사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 ····· 47

02 친환경적인 동물사체 처리방안을 마련했어요 ····· 49

03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 54

04 도, 설계도서 지원으로 공사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 56

05 서민층의 무거운 이자부담을 낮추다 ····· 59

공공행정

01 110년 일재잔재 청산! 문화유산의 잘못된 토지정보 바로잡기 ····· 65

02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길 열린다 ····· 70

03 공동주택의 불필요한 입찰절차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 ····· 72

04 노후주거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해법을 찾다 ····· 74

0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 ····· 77

06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다 ····· 79

신산업

01 규제샌드박스로 이동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제공 가능

02 국산 자원을 활용한 비료 개발로 안전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생태 농업 구축

03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04 국민을 울리는 불법운행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규제샌드박스로 이동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제공 가능

이동약자 병원으로 이동 및 병원 내 동행 서비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031-8008-4287

개선배경

- 기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복지예산을 활용하여 콜 택시를 운영 중이나, 일반적으로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고, 지자체별 운영기준이 다름.
- 사설 앰뷸런스는 거주지에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이 가능하나, 전동휠체어의 탑승은 불가능하며 가격체계도 매우 비싼 편임.
-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 전 장애인, 일시적 거동 불편자까지 포함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동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 약자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 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이동약자 맞춤 동행서비스 제공 가능

개선내용

개선전

➔ 여객법상 면허 필요,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불가, 이동약자를 위한 예외적 자가용 유상운송은 국가와 지자체만 가능

개선후

➔ 특수 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내 동행 서비스 제공 가능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특례를 받아 이동 약자에 대한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제공

  * 11인승 승합차를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100kg상당)에 탄 채로 탑승 가능

  **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등록전 장애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

  ***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이 예약/접수, 치료실 이동지원, 의사소통 도움, 귀가지원 등

추진과정

'20.2.2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20.3월	기업 면담 및 신청을 위한 컨실팅 실시
'20.3.27.	ICT 규제실증특례 신청
'21.4.07.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개선효과

- 이동약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 · 지자체 외 사업 주체도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약자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노인, 일시적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해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

02 국산 자원을 활용한 비료 개발로 안전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생태 농업 구축

추진부서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 031-229-5836

개선배경

- 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 주요 양분공급원으로 수입 유박 의존

  ※ 피마자박수입량('19): 32만 5,000톤(585억원)

- 수입유박 중 피마자박의 리신(Ricin) 성분의 독성에 대한 원료의 안전성 우려로 국가차원의 대체자원 개발 추진
- 현행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된 혼합유기질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는 수입유박을 포함한 식물성 유박이 대다수이므로 새로운 질소원 선발 및 이를 비료 원료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확대 노력 필요

  – 질소원으로 개발한 국산 축각분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포함하여 개정 필요

  ※ 축각분 : 소, 돼지의 뿔, 발톱 등 비식용 도축부산물로 질소함량이 높은 유기자원으로 유박 대비 유기질비료 시용량 및 노동력 절감 효과

개선내용

- 「비료관리법」 제4조 제1 · 2 · 4항 및 시행규칙 제3조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 질소원으로 발굴한 국산 축각분을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원료로 추가하여 개정(농진청 고시, '20.12.15.) 및 시행('21.1.15.)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별표 5】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선전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생략)...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생략)... 〈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8. 3. 30.,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개선후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생략)...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생략)...,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 · 발톱을 건조 · 분쇄한 것)〈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8. 3. 30.,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0.12.15〉

개선전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생략)...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생략)... 〈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5. 8. 24.,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개선후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생략)...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생략)...,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 · 발톱을 건조 · 분쇄한 것)〈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5. 8. 24.,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0.12.15〉

※ 관련 :「비료관리법」 제4조 제1 · 2 · 4항 및 시행규칙 제3조

비료공정규격 개정 및 먹거리 안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실용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20.8.13.)

〈도민 참여 현장평가회 개최〉
('20.9.8., '21.8.24.)

〈국산 유기질비료〉

〈적극적인 홍보활동〉
(경기농업 21 12월호)

추진과정

'18.8.30.	**특허등록** : 축각분을 포함한 유기질비료 제조방법
'19.4.9.	**정책제안** : 국산 유기자원 활용을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 건의
'20.2.25.	**기술이전**
'20.4.10.	**농자재 등록** : 국산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등록
'20.12.15.	**비료공정규격 고시개정** : 국산 축각분을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원료로 추가하여 비료공정규격 고시개정
'21.1.21.	**혼합유기질비료 등록**

개선효과

- 국산자원 활용 경제적인 유기농업자재 개발 및 보급으로 수입유박 대체 및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 구축
- 새로운 국산자원 활용을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및 전국단위 확대보급 가능

03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부천시 주도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주차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추진부서 부천시 기업지원과 ☎ 032-625-2742

개선배경

- 도시의 양적팽창과 높은 인구 밀도에 따른 차량 증가로 주차 문제 지속 확대
  - 부천시 인구밀도(1㎢당 16,261명)/ 등록차량 33.5만대에 확보 주차면수 29.2만면

  ※ 인구밀도 전국 상위권, 주차장 확보율 87%(부천시는 주차와 전쟁 중)
- 주차 문제 해결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주차로봇을 개발하였으나, 관련 법률 및 사례 부재로 사업화 난관
  -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로봇은 기계식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안전도 심사 등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사례 전무로 실제 도입 어려움

개선내용

개선전

➔ 주차공간 부족 문제 심화
- 로봇을 활용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로봇 개발 추진

➔ 주차로봇 관련 법 ·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화 문제 발생
- 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추진

개선후

➔ 주차로봇 관련 법 · 제도 개정을 통한 사업화 가능

➔ 주차로봇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간활용 증대를 통한 관내 주차난 해결 가능
- 국산 로봇부품 사용을 통한 로봇산업 활성화 기여

규제애로 개선과정

- (법률 개정 건의 추진) 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관련 법규 개정 추진

(1) 제품 해당 규제 확인

- 2019. 7월: 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 中 규제신속확인* 신청

  * 새로운 융합 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 · 요건 등을 신속(30일 이내)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 2019. 8월: 규제신속확인 회신

[참고] 규제신속확인 회신내용

– 국토부 : 주차장법 제19조6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에 따른 심사 및 인증 필요

– 과기부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전파 적합성 평가대상

※ 「주차장법」 및 관련 세칙에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 규격 등이 부재하여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

■「주차장법」 제2조(정의)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6(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 · 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애로 개선내용

● (실증특례 승인 및 제도 활용 사업화 추진) 국내 최초 주차로봇 주차장 시범운영 추진

– 2020. 10월 : 제4차 실증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최종 승인('20.10.19.)

- 실증기간 : 2년 (2021. 2월 ~ 2023. 2월)
- 실증장소 : 부천 신중동 테스트베드(부천 계남고가교 하부)
- 기존 20대 자주식 주차공간 → 신규 26대 주차 가능 (30% 효율제고)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초청 시연회 개최

– 2020. 10월 : 주차로봇 도입계약 체결(인천 부평구)

- 부평구 굴포먹거리타운 신설 주차장에 주차로봇 도입 확정 및 계약 체결 완료

※ 계약액 : 17억원 (주차로봇 5대, 관제시스템 및 엘리베이터 등)

- 부천 테스트베드와 함께 실증특례 대상지로 신청, 완공 후 실증운영 예정
- 기존 40대 자주식 주차공간 → 신규 60대 주차 가능 (50% 효율제고)

– 2020. 12월 : 주차로봇 사고 대비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

- 산업융합촉진법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 책정(대인 1.8억 / 대물 10억)

  * PL보험 : 생산제품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2021. 2월 : 주차로봇 실증특례 시범운영 개시(~2023. 2월)

- 실증특례 절차에 따라 부천형 주차로봇 테스트베드 공간을 부천원미경찰서 직원 대상으로 하는 부천형 주차로봇 시범운영(최대 10면) 공간과 산업부 주차로봇 테스트베드로 이원화하여 운영
- 실증 시범 운영기간: 2021. 02. 26. ~ 2023. 02. 25. [2년간]
-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 개소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참석)

– 2021. 5월: 산업부『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유치

- 사업목적 : 시장출시 애로해소를 위한 주차로봇 기술 및 안전도 인증 기준(안) 개발 지원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2. 4월 [12개월]
- 총사업비 : 2.62억원(국비1.45억, 민간 1.17억)
- 주관/참여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부천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 자율주행 스마트 주차로봇을 이용한 주차지원 기술기준(안) 개발
  - ▸ 주차로봇 주차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 ▸ 주차로봇 주차장에 대한 안전기준 수립 및 평가방법 개발 등

● (국비사업 유치를 통한 기술개량추진) 로봇 적용처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 2020. 5월 : 산업부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치

- 사업목적 : 기존 파레트 방식의 주차로봇 기술 개량 및 주차로봇 적용처 확대를 위해 파레트 없는 타입의 주차로봇 개발 추진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2. 12월 [32개월]
- 총사업비 : 59.8억원(국비42억, 시비 6억, 민간 11.8억)
- 주관/참여 : ㈜마로로봇테크 / 부천산업진흥원(부천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올로케이션
- 사업내용
  - ▸ 30%이상의 주차공간 효율증대가 가능한 주차로봇 시스템 개발
  - ▸ 차량 하부에서 리프트하는 파레트 없는 타입의 2종 주차로봇 개발 등

개선효과

- 로봇활용 시 공간효율 30% 이상 향상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성 증대
- 로봇부품 70%이상 국내기업에서 조달 및 제작으로 국산 로봇부품 기술 고도화, 기업 매출 성장, 신규일자리 창출 등 로봇산업 활성화 기대

주차로봇 사진 및 실증운영 증빙사진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주차로봇이 차량을 리프트 한 모습

부천 신중동 주차로봇 시범운영 현장
(~'23.2월까지 시범운영 예정)

인천 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 조성 현장
('22.2월 준공 예정)

≡ 매일경제

"번거로운 주차, 로봇에 맡기세요" 주차로봇서비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로봇이 자동으로 차량 입·출고...부천·인천서 2년간 실증테스트

양연호 기자 | 입력 : 2020.10.19 13:27:14 | 0

주차차량운반기 (QR코드인식, 4.2×1.8×0.35m)	운반대(팔레트)	차량 탑재

△부천시, 마로로봇테크이 함께 개발한 '스마트 주차 로봇' (자료 =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비좁은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해주는 서비스가 개발돼 시범운영에 착수하면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 로봇 서비스는 주차장 출입구에 도착한 차량을 로봇이 알아서 주차했다가 찾을 땐 다시 탑승 장소까지 가져다주는 무인주차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함께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차량 운반기가 개발·제작됐다. 주차 차량 운반기는 현재 실증테스트 단계로,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아 부천시 중동 계남고가 아래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차 차량 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차 로봇 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주차장 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 로봇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간 최소화를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 로봇 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해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주차

보도자료

경인일보

주차로봇 '나르카', 인천 부평구에 공급계약 체결

정철순 기자 입력 2020-10-23 17:18:11

주차로봇 나르카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가 인천 부평구 스마트 로봇주차장에 공급된다.

나르카의 개발사인 ㈜마로로봇테크(대표 김덕근)가 지난 6일 '부평구 스마트 주차로봇 사업'에 입찰해 최종 17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계약에 따라 굴포먹거리타운 지하에 202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된 VPN 기반 스마트 로봇주차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이 조성된다.

나르카는 일명 '주차해결사'로 주차 편리성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주차 공간 효율을 높인 주차로봇이다.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과 지역 로봇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부천시와 부천 소재 물류로봇 전문기업인 ㈜마로로봇테크가 주관한 컨소시엄이 협력해 나르카를 개발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 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 스마트주차로봇서비스가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하면서, 일시적 규제 유예로 사업화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이웃도시 부평구에서의 첫 적용사례가 주차로봇 공공 사업화에 미칠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부평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가 열리는 등 '나르카'에 대한 타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 시는 주차로봇을 스마트시티 주차부문의 랜드마크로 성장 시켜 부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부각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로봇핵심기술개발사업(2단계 주차로봇 개발사업)' 유치에 성공해 파레트 없는 주차로봇을 2022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주차로봇의 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주차수요에 대응하여 주차로봇 사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배 기업지원과장은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이 올해 말까지인데도 타 지자체에서 보내온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주차로봇 사업화를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천/정철순기자 soon@kyeongin.com

주차로봇, 규제샌드박스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부천시 기업지원과장 **윤주영** 032-625-27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힘든 여건 속에 주차로봇 개발을 맡아 진행해 준 관내 기업인 마로로봇테크를 비롯하여, 실증운영이 가능하기까지 많은 도움 주신 부천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천시는 전국 인구밀도 상위에 속하며, 주차장 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부천시의 거주 불만족 요인 중 주차시설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 특화산업인 로봇산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기획위원회를 통해 주차로봇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기계식 주차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등 많은 의문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의 확보, 주차로봇의 안정성 확보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부천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때는 주차로봇 개발 이후, 관련 법제도 부재로 인해 사업화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때였습니다. 이에 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특례제도를 신청하였으며, 우리 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마주한 결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지금도 관련법 개정 및 규제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차로봇 개발을 통해 주차공간 30% 이상 향상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편의성 확대와 지역 내 로봇기업 고도화를 통해 로봇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고 안주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 국민을 울리는 불법운행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

추진부서 오산시 징수과 ☎ 031-8036-7221

개선배경

- 국가재정 악화의 주범인 고질적 체납 차량과 국민생활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운행(대포차)차량 단속 필요성 대두
  - 현재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2천 4백만 대이고 이 중 교통(차량)관련 고질체납 및 불법차량은 약 6백만 대로 전체의 25%차지
  - 전국 등록 차량 및 불법차량 현황

전국차량등록현황	불법(체납)차량	운행정지명령신고	의무보험미가입
24,365,978대	5,989,458대	97,038대	806,641대

- 불특정 불법운행(체납)차량 단속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등 무작위 불법운행(체납)차량 적발 업무프로세스 시스템에 따른 시간 및 효율성 저조 등 국민 불편 사항 발생
  - 불법운행(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근거 및 소관부처(부서)

구 분	지방세 체납	운행정지명령신고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체납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세정 부서)	국토교통부 (차량등록 부서)	국토교통부 (차량등록 부서)	법무부 (교통부서)

- 소재지가 불명확한 고질 체납 및 불법운행차량 등 지자체의 통일된 적발위치 수집/분석 통합 연동 플랫폼 필요
  - 차량소재 사전파악, 단속 가능한 추적관리시스템 부재
  -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불법(대포) 차량: 약 100,000대 운행 중

※ 전국 지자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보유현황: 200여개 시 · 군청, 약 300여대 보유

개선내용

- 사업명 : 클라우드 기반 불법(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 사용개시일 : 2020년 1월 1일
  - 사용범위 : 전국 지자체(대포차 및 운행정지명령 신고차량) 단속부서
  - 시스템 개요

개선전

➜ 현장 실시간 조회 가능
(자동차세+차량관련과태료+
경찰서소관 교통과태료)

개선후

➜ GPS기반 위치정보 관리 영치시스템 구축
➜ 실시간 체납 통합조회 및 단속 관리 웹(web) 구축
➜ 세외수입과태료 징수촉탁 매뉴얼 기능 구축

  - 사업내용: 전국 자치단체의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운영, 이동 CCTV를 통해 적발된 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의 위치, 경로를 빅데이터 수집·분석하여 추적관리 및 정보공유

※ 지자체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설치 현황 : 전국 200개소

  - GPS위치 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구축
  - 교통관련 체납세 징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 징수 및 범법 차량 합동단속으로 사회 위험 요소 감소(6개부서 → 징수과 통합)

※ 체납자 소재지를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하여 맞춤형 체납액 징수

〈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사업개시 사례 〉

추진과정

'19.04월 ~ '21.11월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기관과 업무협의 –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통정책과), 공공클라우드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20.03.30.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기술구현 완료
'20.05.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선정
'21.01.30.	클라우드 기반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사업 완료
'21.03.30.	클라우드 기반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사업 개시
'21.03.31.	경기도 외 시군방문 설명 및 홍보 : 9회 20개 지자체
'21.04.30.	전국 20개 지자체 보급(경기도내 10지자체 포함)
'21.05.07.	지상파 방송
'21.08.16.	국회 홍기원국토교통부상임위원 업무협의(관련법령 개정안)
'21.08.23.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보급 계획)
'21.11.30.	국토교통부 · 국회 · 오산시 업무협의

개선효과

- GPS위치기반 영치시스템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활용 불법운행차량 적발
  - 불법운행차량 304대 적발 및 공매처분 징수 : 40대(2020년 기준)
  - 전국 25지자체 50라이센스 보급
- **(공공성 효용가치 기대)** 사회 위해요소인 불법 및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정보 제공을 통한 단속 증가로 공익성 제고 및 질서안정
- **(조세정의실현 기여)** 불법운행차량 소유자 적발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 불법 차량운행에 대한 의식 전환 계기 등 진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 **(고충민원해결 기여)** 코로나19 발생 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불법 운행 차량 단속을 통해 생활 불편 해소

경기신문 202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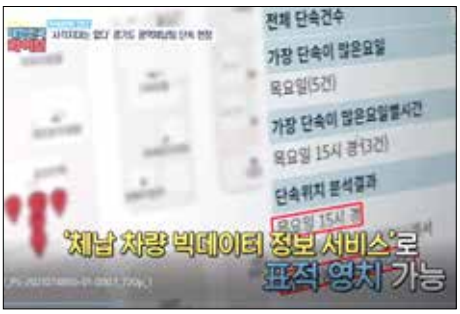

지상파 방송장면 2021.5.7.

끈질긴 노력 끝에 획기적인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의 기반을 일구어내다.

오산시 징수과 **손창완** 031-8036-6841

1.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운행차량의 현황 및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천2백만 명이라고 한다. 이 중 노인 · 유소년 연령대를 제외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약 4천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 등록 차량은 약 2천4백만 여대이며 국민 2.3명중 1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실제 도로상에 운행 중인 차량 4대 중 1대는 체납 · 불법 운행 차량으로 약 600만 여대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체납차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불법운행 차량의 경우 일부는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GPS기반 영치시스템을 특별히 특허를 낼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불법운행차량을 현장 단속 중에 도로상에서 접촉사고가 난 차량을 보게 되었다. 한 대는 무한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반면 가해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피해차량 소유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차량은 적당히 합의를 보자고 보험처리를 기피하면서 이동하는 것이다. 가해차량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거리를 달리는 불법운행차량을 주소지 인근에서 적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빅데이터화 하여 적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착안하여 피해보는 국민과 단속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3.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담당 사무관의 마인드 전환이었다.

차량 보유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및 국민생활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운행 차량 단속이 미비한 데에는 '행정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재에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보 공유를 통한 상시 단속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불법운행차량 및 고질적 체납차량 적발 데이터를 모아 추적하고 적발하는 '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조와 참여가 많이 필요하였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품삼아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었다.

4. 불법운행차량을 단속 · 적발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단속 적발하는데 법률적으로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불법 및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법을 집행하는 행정력에 아쉬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5.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추운 겨울 날씨에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이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전남편의 차량이 명의 도용되어 체납자가 되었다. 그런데 무한돌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할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추적하여 해당 차량을 찾아서 강제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하여 민원 해결을 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6. 담당자의 한마디

그동안 "국민을 울리는 불법 운행 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체납차량 · 불법 운행 차량을 적발하는 빅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계 선진국들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산업의 선점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기관도 이제부터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와 친해져야 하겠다.

빅데이터의 활용이야말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므로 나부터 역량을 강화하여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친해져야 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 혁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업애로 해소

01 지식산업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가능

02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신설 제안

03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기준, 기업 편에 서서 잘못을 고치다

04 경기도 외투단지, 규제를 만들어 규제를 합리화하다!

05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지식산업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가능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한 규제합리화 사례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031-8008-4108

개선배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건축법상 공장목적 외에 사무실을 이용한 업무시설은 입지가 불가능
  - 산업집적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건축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이 적합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를 공장으로 할 경우 제조업체만 입지가 가능하므로 2010년 산업집적법 개정 전 아파트형공장으로 후퇴 우려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득할 경우 건축사무소의 건축법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나 업무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
  - 산업집적법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시설에 건축기술서비스업이 있음에도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법상 공장이라는 이유로 건축사무소 개설신고가 불가한 사항임

[피해사례]

○○○는 2020년 11월 건축사사무소를 이전 개설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 및 금융혜택이 있는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도 약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입주하지 못하고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계속 부담하고 있고 현사무실 임대비도 나가는 등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1년 안에 입주하지 못하면 취등록세 50% 감면받은 것을 추가 납부 및 재산세 감면도 사라지며, 의도치 않게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되게 되어 구입시 환불받은 부가세도 문제가 생겨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상황임

개선내용

- 「산업집적법」 및 「건축법」의 상이한 시설입지 규정이 법령개정을 통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가 불가능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관원회신을 통해 규제 해소

개선전

➜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불가

개선후

➜ 건축사무소 개설 시 산업집적법 상 입주가능대상업종 및 실제 사무실로 사용가능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가능해짐

경기도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21.4.1.)

지식산업센터 복도

지식산업센터 내부 사무실

추진과정

'21. 1.28.	민원인 국민신문고 건의(1차)-남양주시 불가 답변 회신
'21. 2. 2.	민원인 국민신문고 건의(2차)-남양주시 불가 답변 회신
'21. 3. 8.	경기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합리화 문의
'21. 4. 1.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개최
'21. 4.1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21. 4.22.	국토교통부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실에 대한 가능여부 공문 회신

개선효과

-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기업 활성화
- 지식산업센터에 기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규제 완화

02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 제안

추진부서 파주시 징수과 ☎ 031-940-4268

개선배경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는 폐업 후 재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및 본세의 분납허가의 세제 지원이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체납징수특례 신설의 제안 필요성

[피해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세 차원의 지원이 없어 체납자의 경제 재기에 어려움이 있음.

※ 영세개인체납자 세제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

개선내용

개선전

➜ 지방세에는 조특법에서와 같이 영세개인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과세 형평성이 어긋남.

개선후

➜ 영세개인체납자 회생 의지 고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재취업 및 재창업 후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 법적근거 마련

추진과정

상급기관 개선과제 제안

'20.02.07. 규제개선과제 제안 제출

'20.02.18. 지방세입제도개선 토론회 제안

'20.02.27.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안건 제출

'20.04.13. 경제위기대응 현장지원을 위한 설문제안

'20.10.23.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드라이포트 혁신동아리 활동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5월 동아리 발대식, 동아리 연구모임 5회(2020년 7,9,10,11,12월)

7월 체납액징수특례 연구 분야별 발표

10월 지방세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연구과제 발표

입법진행 경과

'20.11.13. 파주시 제안 수용, 행안부 제출(경기도 → 행안부)

'21.01.13. 경기도지사 중대본회의 통한 중앙부처 건의

'21.02.02. 의원입법발의

'21.03.23. 국회 본회의 통과

'21.04.13.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신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개선효과

- 상급기관에 「체납액징수특례」관련법 제정을 '전국 최초' 건의하여 세제지원 활성화
  -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본세의 장기적 분할납부의 세제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지원
- 경제재기의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기여

보도자료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지원안' 정부에 건의

송고시간 | 2020-12-07 16:29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0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도자료. 2020.12.7.子 연합뉴스 외 다수〉

'파주시가 시작하면 법이 된다'...市, 최초 제안 제납액 특례 4월 시행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 국회 통과
지방세 통어리 제안→최종환 시장 추진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세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한 혁신동아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체납액 징수특례가 국회를 통과, 4월부터 시행된다.

12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혁신동아리 '도라이포트'가 구체화하고 지난해 10월 최종환 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낸 뒤 경기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의 제도다.

〈보도자료. 2021.4.12.子 이데일리〉

칠전팔기 영세개인체납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안 신설

파주시 세정과 **박세용** 031-940-4218

파주시 지방세 연구모임인 드라이포트는 지방세체납을 다루는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순수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지난 한 해 1년여의 시간 동안 「칠전팔기 영세개인체납자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안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결국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국에 시행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노력을 경진대회에 나가 발표하고 입상할 수 있게 되어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경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의욕이 충만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규제합리화, 적극행정, 혁신」 단어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무한 긍정이고 창의적이며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조직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내부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처음 「체납액 징수특례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을 때 무시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로 거의 호응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법률이 개정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시대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성격상 신중해야겠지만, 의견 개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고 실험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직이 활성화되고 직원 개인들의 삶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우리와 같이 기존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을 또 다른 드라이포트팀을 응원합니다.

03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기준, 기업 편에 서서 잘못을 고치다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내 입주한 협력업체 임대료 중복부과 면제

추진부서 경기도 투자진흥과 ☎ 031-8008-2779

개선배경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동반 입주시킬 수 있으나 기존 임대료는 변경 없이 협력업체 임대료 중복부과는 불합리하며 기업 손실을 초래함
- 협력업체가 입주한 사업장 면적은 모기업의 임대료 책정 면적에도 포함되어 있음

☞ 임대면적의 중복으로 불합리한 임대료 책정 기준의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전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제22조(협력업체 입주제도)
① ~ ③ (생 략)
④ 임대료는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개선후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제22조(협력업체 입주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한 협력업체의 임대료는 제17조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 협력업체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추진과정

'21. 3월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건의
'21. 7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간담회 건의
'21.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71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개선효과

- 외투단지 내 기업이 잔여 계약기간까지 임대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 최근 협력업체 입주 요청 기업이 증가하여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임대료 부담 없이 협력업체 입주하여 원활한 기업활동 기대됨

04 경기도 외투단지, 규제를 만들어 규제를 합리화하다!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수립 시행

추진부서 경기도 투자진흥과 ☎ 031-8008-2779

개선배경

- 투자의향서, MOU체결, 부지분할 · 합병 등 기업유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어 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입주 후 부실기업의 투자매칭 · 영업양수도 등 회생지원 및 사후 처리를 위한 명확한 체계가 없어 국 ·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 발생
- 특수성이 많은 외국인투자 임대단지(외투단지)에 정주할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 검증이 없어 입주 후 외투비율, 사업계획 등 입주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였음

☞ 전국 최초 경기도 외투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수립,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개선내용

개선전

1. 외투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2. 입주자심의제도
   - 정성평가 100%
   -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6명, 외부인원 1명

개선후

1. 외투단지 관리운영 매뉴얼 세부지침
   - 투자유치절차
     - 입주 절차 · 관리 강화 및 사전검토확대
     - 철저한 사전평가 후 계약절차 진행
   - 외투단지관리
     - 입주자심의 의견 계약서 반영
     - 잔여부지, 필지 변경 기준 수립
     - 체납기업 자구책 검토 후 계약유지 결정
   - 관리대상기업
     - 회생지원, 행정처분, 경공매 관리
2. 입주자심의제도
   - 정량평가+정성평가 도입
     - 사업성, 재무, 기술경쟁력, 지역 기여도 반영
   - 심의위원 변경(道 · 市공무원→외부전문가)
     - 변호사, 대학교수, 투자유치 · 자산관리전문가 등

개선효과

- 전국 최초로 외투단지의 실정에 맞게 기업유치, 입주 단계별 관리와 부실기업의 처리방안을 상세히 담아 효율적 국유 · 공유재산관리 정착에 기여하고
- 기업에서는 복잡하고 특수 조건이 많은 외투단지에 정주할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로 입주준비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 감소에 효과적이며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내기업 임대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계획으로 향후 모든 임대산업단지 규정 수립의 초석 역할 기대

보도자료

경인방송 TV FM

2021년 07월 21일 (수)
종합

경기도, 외투단지 체납임대료 12억5천만 원 환수..."적극행정 성과"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 내 체납기업에 대해 총 12억5천만 원의 임대료를 환수했습니다.

도는 외투단지내 체납임대료 환수를 위해 지난해 부터 자본합작과 영업양수도 같은 투자매칭으로 기업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모두 4개사로부터 12억5천2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내 외투단지 내 총 체납 임대료 85억 원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는 체납임대료 중 파산과 청산, 폐업한 기업의 체납액이 전체의 65%인 55억7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환수율은 42.7%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평택 추팔산업단지 입주기업 D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철수로 인해 외투단지 입주자격이 상실되고 경영위기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도는 기존 공장매입을 희망하는 유사업종의 잠재투자자를 발굴해 기존 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를 지원했고, 미납임대료 2억4천여만 원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평택 외투단지 내 또 다른 외투기업 G사에 대해선 유망한 국내 자본 매칭을 통해 체납임대료 완납을 조건으로 자본합작이 완료되도록 합의를 지원해 5억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미결채무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지급명령, 기업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할 방침입니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해 성실 납부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법치과 포용이 혼합된 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외투단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평택, 화성, 파주지역에 6개 임대단지 191만㎡에 99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매출은 8조 6천190억 원, 외국인투자 21억4천만 달러, 고용 9천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구대서 kds@ifm.kr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경제

2021년 07월 22일 (목)
28면 전국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기업들 살린다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이하 외투단지) 내에 신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심의제도 강화 등 새부운영지침을 마련한다. 입주기업의 파산을 막고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외투단지의 체납임대료는 약 85억원으로 파산과 폐업 등으로 인한 체납이 전체의 65%인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임대료 가운데 14.7%에 해당하는 12억5200만원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환수했다.

이선범 경기도 투자환경팀장은 "최근 일부 외투단지 입주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대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매칭 등 기업회생을 최우선 목표로 세무운영지침을 마련해 지원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에는 평택 주발외투단지 등 8개 외투단지에 9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원칙과 포용이 혼합된 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외투단지 세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신영 기자

05 그린뉴딜 신기술「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

신호등 지침 개정으로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 신설,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개정으로 난연성 기준 완화

추진부서 안양시 정책기획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을 세계 최초 개발하였으나,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2011)」에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7년 동안 시장 진입을 못 해 사장 위기에 처함
- 이후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강화 중첩 규제 발생으로 신기술뿐만이 아니라 전국 신호등 업체의 판로까지 차단되어 전국 교통 신호등 체계 혼란까지 예견

[피해사례]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성능평가기준이 기존제품에 한정하여 2가지 특허를 획득한 혁신제품이지만 등록 후 7년간 제품화하지 못하였고, 이어진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강화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신호등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모든 기업의 판로가 막히고, 전국교통신호등 체계 혼란도 예견되었음

※ 관련규정 「경찰청 LED신호등 지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 신설하여 시장진입 가능,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완화로 기존 기업 판로 확보**

개선내용

개선전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2011)」에 신기술 자동디밍절전형 교통신호등 램프의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
- "신호등 외함(外函)의 재료 난연성(難燃性) 기준 UL 94 V-0 등급 이상"규제 신설로 국내 신호등 업계 판로가 막힘

개선후

- 신기술 성능을 반영하여 조광제어 방식에 "제어기 방식"을 신설, 성능평가를 통한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
- "신호등 외함(外函)의 재료 난연성(難燃性) 기준 UL 94 V-2 등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호등 기업 기존의 판로 유지

- 수백 차례의 건의, 협의를 통해 2년 만에 관련 부처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에너지 절감, 친환경 신기술 신호등이 시장진입에 성공하였고, 63개 신호등 업체도 기존 판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예견되었던 전국 교통 신호등 체계 혼란도 예방하였음.

신기술 신호등과 기존 신호등 비교

기존 신호등		신기술「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조도데이터와 신호주기를 제어기에 전달하여 신호등램프의 점멸과 디밍을 동시 실시하는 시스템. 과부하, 조기 성능저하로 기준 조도 미확보로 대부분 디밍 미실시	디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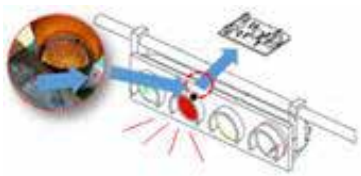 별도의 제어기 없이 개별램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점진적 자동 디밍
6.5W	소비 전력	3.5W
눈부심 현상, 시인성 저해	시인성	시인성 좋음(기존대비 98% 이상)
제어기 등 일체 교체	보급 효율	램프만 교체(기존대비 90% 절감)

추진과정

규제 1 :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7년간 시장 진입 불가

[대응 논리]

기술의 혁신성(세계최초 신기술), 안전성(최적의 시인성), 경제성(전력사용 46%, 설치비 90% 절감), 친환경성(탄소배출 연간2만톤, 탄소중립비용 10억원 절감)

☞ 세계를 선도하는 K-ITS 마중물 신기술 시장진입을 위한 제품성능평가 규격 추가 필요

'19. 2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규제 최초 발굴

'19. 3월~12월 73차례의 밀착 지원을 통한 2번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실패

'19. 3월~'20. 4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 건의 및 협의

'19. 5월~12월 기업 신제품 테스팅 자료 등 정량적 객관적 평가자료 마련 조력

'20. 5월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 완료

규제 2 : 유예기간 없이 신설된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으로 63개 신호등 업체 도산 위기 직면

[대응 논리]

- 신설된 난연성 기준의 불합리성: 신설 규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V-0*)은 소비전력 6~7W로 화재염려가 없는 현행 LED 신호등**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기준
  - * V-0: 소방용구나 2차 발화의 염려가 높은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최고등급의 난연성 기준
  - ** 교통신호등 9,531개 중 98.9%인 9,426개가 LED조명 신호등이며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지난 10년간(2010 ~ 2019) LED조명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0건' (소방청 화재연감 통계)
- 유예기간 없는 시행 : 국내에 기준을 충족하는 외함생산 가능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음에도 준비기간 없이 시행된 규제로, 시장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신기술 포함 63개 영세신호등 업체의 판로가 순식간에 봉쇄, 전국교통신호등 체계 혼란도 예견
- 준비기간도 없는 과도한 규제의 개선에 공감하는 63개 신호등기업, 협회와 함께 개선 추진

☞ 산업환경과 기업 상황을 반영한 규제의 완화

'20. 3월 신호등 업체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규제 발굴

'20. 3월~11월 전문가 자문, 관련부처 건의

'21. 4. 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난연성 기준 완화 V0→V2)

개선효과

- 신기술 신호등 2,000억 국내 시장 진입과 해외시장 물꼬
- 친환경 그린뉴딜 선도
  - 신기술은 소모전력 약 46% 절감, 전국 도입 시 연간 4,600만kw 파격적인 에너지 절감 기대
  - ☞ 이는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 294kwh/월 적용 시, 15만 가구 이상이 한 달에 사용하는 전력량임
  - 탄소배출량 연간 2만여 톤 절감 가능
- 국가 예산 획기적 절감 및 국가 · 지자체 신호등 수급 원활화
  - 소모 전력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연간 약 168억 원 절감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없음, 설치비 90% 절감
- 국민의 생명 · 안전 보호: 야간 신호등 눈부심 방지 및 주 · 야간, 일몰 · 일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최적의 시인성 제공으로 도로교통 안전 확보
- 난연성 기준 완화를 통해 63개 영세 신호등 업체의 봉쇄된 판로를 복구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고
- 산업환경과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예견되었던 전국 교통신호등 운영체계 혼란을 예방
-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교통시설물 개발 촉진

규제샌드박스 기업 간담(전문가)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작성 지원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지원

규제샌드박스 대응방안 논의(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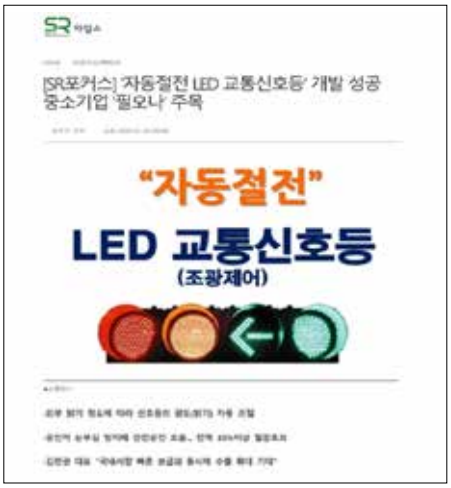

[SR포커스] 자동절전 LED 교통신호등' 개발 성공 중소기업 '필오나' 주목

"자동절전"

LED 교통신호등

(조광제어)

2020. 1. 신기술 소개 보도 자료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 대회 이래 유례 없는 '최초 금자탑'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2019~2020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대회 이래 유례없는 안양시가 이룬 최초의 금자탑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해 그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안양시는 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이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킨 사례이다.

기업 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은 안양시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의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에 걸쳐 다채널 전의를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해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신기술은 최대 50%까지 전력사용량 절감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파격적인 저비용 도입과 유지비 절감이 가능한 혁신기술로 전국적용 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전수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안양시는 지난 3년간 신산업 규제혁신에 집중하여 원천기술 ICT 융합 의료기기(2019년 최우수), IoT 기반 스마트 AED(2020년 최우수), 스마트팩토리 등 6개 신기술의 473조 원 규모 세계시장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3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얻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지자체임을 재확인한 안양시의 한국판 뉴딜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의 도전이 기대된다.

2021. 9.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

재정 STORY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안양

최근 정은 기업에서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애자일(Agile)' 조직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애자일이란 '기민한', '민첩한'이라는 뜻으로 사무환경에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팀원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조직문화 개혁은 비단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는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되었던 애자일 성과사례를 시장을 만나 들어본다.

글. 정혜원 일러스트. 김혜리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빠른 행정

안양시는 90년대에 1기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집중되어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다. 그러나 15개의 대기업과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 다시 활기찬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안양시는 다양한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산업단지사업 조성을 시작으로 41개소의 지식산업단지를 입지(2개소 2022년 준공 예정)시켰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4,525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안양시는 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 집중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빠른 변화, 느린 행정' 문제였다. 산업 트렌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제를 아울고 이른바 "경계의 붕괴", "경계의 융해성"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 했다.

* 조직구성을 정책과 사업 단위로 진행하였음 주.

① 신호등의 시인성과 소요 전력의 획기적 개선 제품 시장진입 규제 개선

주변 환경의 조도를 센서로 감지하여 신호등 램프의 광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소요 전력을 절감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LED램프라는 그린 녹색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램프"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개발 후 7년간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안양시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3회 임차 지원,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5차례, 정장평과 시장 방문 12회 등의 노력으로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 신제품 성능평가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성능평가 규격을 신설하는 등 중점 규제를 개선했다.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은 2천억 규모의 시장 신기술 독점 진입 기회를 확보했다.

애자일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

사기업보다 비교적 조직 운영이 유연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최대호 시장은 애자일 조직 구성과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대해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지요. 또한 사기업에서는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와 보상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고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과실이 없으면 열심히 보상되는 공직문화에서 낯설고 어려움 문제에 도전하겠다는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조직원을 선발하는 것도 만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애자일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인정하여 전국 최초로 특별승진 사례를 배출했지만 아직도 도전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애자일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일례라는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어서 추후에 다욱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때까지 안양시 직원들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제를 발굴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 성과를 낸 조직원에 대한 보상 시스템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시행하여 앞으로 더 나아지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피행은 행정가구이지만 운영은 애자일한 공공부문 애자일 조직의 한 예시가 되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전 조직이 인접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갖춘 애자일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며 보부를 밝혔다.

2021. 3. 한국재정정보원 규제개혁 사례 소개 인터뷰 중

- 신호등의 시인성과 소요전력의 획기적 개선 제품 시장진입 규제개선
- 자동디밍 절절현 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 판로를 구하다

Interview

대표님...이제는 그 신호등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정책기획과 **이난영** 031-8045-2209

"이젠 다 됐어, 바로 해 줄 것 같아"
㈜필오나 김한권 대표가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오십니다.
수차례 겪었던 상황이지만, 몇 분 후 대표의 실망할 모습에 마음은 짠해집니다.

70대 중반의 대표가 생의 3할을 신호등 개발에 매진하여 2개의 특허를 출원한 전력절감 · 안정성을 제고한 신기술 신호등.

그러나 성능평가 부재로, 7년간 시장 진입을 발목 잡고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안양시와 2019년 2월부터 함께 했습니다.

여러 번 허탕 치고도 여지없이, 또, 규제부처 담당자의 대응을 곧 규제개선수용으로 믿고, 필자에게 확인을 주문하고 책상 위 전화기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늘 불쑥 찾아오셔서 나름의 빈틈없는 작전계획 수립 후에는 그간의 무용담과 불신을 쏟아내며 위로와 공감을 청하기를 2년.

올해 4월, 중첩규제까지 개선되어 이제는 신기술 신호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로 애로를 겪던 63개 신호등 기업도 판로를 지켜냈습니다.
그 신호등이 전 세계 도로 위 차량들을 진두지휘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빨랐다면 올해 1월 작고하시기 전에 기쁨을 같이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대표님!

관계 부처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고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 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 공무원을 직업으로 택한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안양시가 집중하고 있는 신산업 · 신기술 규제 발굴 차 기업현장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전장 같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은 '을'중에 '을'이었습니다. 불합리함을 개선해달라거나 필요한 도움에 대해 선뜻 입을 떼기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을 떠나 섣부른 말 한마디가 어떤 불이익으로 연결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공무원과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워 합니다.

공무원 월급 주는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물음에 대한 필자의 답이었습니다.

만 2년이 넘는 경험치가 쌓였지만 규제개혁은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기업과 무슨 관계냐"
"지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허용해주면 다른 것도 해달라고 해서 어렵다."
규제부처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를 위해 규제개혁을 권고하고, 규제 없는 놀이터 「규제샌드박스」도 생겨났지만, 규제자 · 피 규제자간 유기적 협의와 소통의 거리는 요원합니다.

사례집을 읽고 계신 지자체 · 중앙부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편, 신산업 · 신기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 합리화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법의 해석도, 시스템도, 트렌드를 반영하며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은 비중 있는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안양시의 규제개혁 도전과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생활불편 해소

01 공동주택 세대 누수공사금액 조사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

02 친환경적인 동물사체 처리방안을 마련했어요

03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04 도, 설계도서 지원으로 공사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05 서민층의 무거운 이자부담을 낮추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공동주택 세대 누수공사금액 조사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

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4919

개선배경

- 공동주택 공용부분 누수는 관리주체 등이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반면, 세대 내 누수는 입주자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하여 보수공사를 의뢰하는 실정임
- 세대 내 누수공사 시 지역 · 업체별 및 누수탐지기 유무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 견적이 부풀려지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 청구 등 도민 생활 불편 사례 빈번히 발생
  - 세대 내 누수 발생 시 보수업체 및 가격 등을 신중히 고려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정보 확인 등이 어려워 도민 생활불편 장기화 초래

개선내용

- 경기도 내 공동주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수리업체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배포, 비치 ('21.2.2. / 道 → 시 · 군 → 공동주택단지)
  - 제공정보 : 수리업체 현황, 연락처, 가격정보(누수탐지기 유무, 출장비, 누수탐지비, 공사비 등)

※ 공동주택 세대누수공사 시장가격 조사 용역

- (발주)GH공사 / (용역기간) '20. 9. ~ '20. 12. (3개월) / (용역비) 20백만원
- (내용) 31개 시 · 군 소재, 204개 누수업체 현황 및 공사가격(출장비, 탐지비, 공사비)

- 세대 누수 발생 시, 지역 수리업체 정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 세대에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업체 위치 · 공사가격 등을 참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

개선전

➜ 세대 누수 발생 시, 지역 수리업체 정보를 피해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 합리적 조건으로 신속한 대응 어려움

개선후

➜ 세대 누수 시, 피해 세대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 수리업체 정보 사전확인 용이 → 가격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조건으로 신속한 대응 가능

추진과정

'20.06.25.	공동주택 세대 누수 수리공사 관련 회의(道, GH공사)
'20.08.19.	〈업무보고〉공동주택 세대 누수공사 가격 표준화 관련 추진계획 보고
'20.08.24.	GH공사 협조 요청(道→GH공사)
'20.09.15.	공동주택 세대누수공사 시장가격 조사 용역 착수(한국응용통계연구원)
'20.12.24.	법률자문(누수수리업체 시장가격정보 도민제공가능여부 등)
'21.01.17.	공동주택 세대 누수공사금액 조사용역 추진결과 보고
'21.02.01.	〈언론홍보〉누수수리업체 시장가격정보 배포
'21.02.02.	누수수리업체 시장가격정보 배포(道 → 시 · 군 → 공동주택단지)

개선효과

- 세대 누수 피해 세대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 누수수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수리업체 정보 : 업체명, 위치, 연락처, 누수탐지기 유무, 수리가격(출장비, 탐지비, 공사비)

- 누수 수리공사 시장가격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道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도민이 누수수리 비용의 합리적 가격을 가늠하고, 수리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불필요한 비용 청구로 인한 지역 · 업체별 가격 편차 문제 해소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서 이미지 활용(노출)

02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인 동물사체 처리방안을 마련했어요!

추진부서 안성시 환경과 ☎ 031-678-2615

개선배경

- 2019년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바이러스 검사 후 사체 폐기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환경부, 2019.5월)」에 따라 멧돼지 사체를 현장소각 또는 매몰처리로 폐기하나,
  - 깊은 산골, 야간에 포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비(포크레인 등)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대부분이며
  - 여건상 현장 소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지자체가 발견 (수렵) 장소 인근 현장에 매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ASF 발생지역 외 지역까지도 멧돼지 사체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를 전량 현장 매몰 처리할 경우, 관리 대상 매몰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 발생

[문제점 발생사례]

- 미관저해, 침출수 등 환경오염 발생우려
- 야간 및 겨울철 현장 매몰 어려움 발생 (별도 매몰 인력 필요)
- 토지 소유주 동의 필요 (포획지역 인근에 국유지가 없을 경우)
- 담당 공무원 수시 확인 필요 (포획 보상금 지급, 매몰규정 준수 등)
- 지속적인 매몰지 관리인력 소요 (표지판 설치, 약 3년간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등)
- 기피시설로 인한 생활민원 발생 등

개선내용

개선전

➜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발견장소에서 매몰 처리

개선후

➜ ASF 발생 외 지역의 경우 친환경적인 멧돼지 사체처리방안인 렌더링 처리 방안 건의,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 2019년 당시 환경부의 지침대로 멧돼지 사체를 현장 매몰처리 했을 경우, 약 700여개의 매몰지 발생 → 무분별한 매몰지 확대로 인한 인근지역 생활민원 급증

개정 전 지침

➔ **매몰**
[FRP 저장조 활용 사체처리 방법]
[공용매립장 이용]
[현장 매몰]

➔ **소각**
[현장 소각]
[이동식 소각장치]
[*전문 소각장]
*공용 또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

개정 후 지침

➔ **매몰**
[FRP 저장조 활용 사체처리 방법]
[공용매립장 이용]
[현장 매몰]

➔ **소각**
[현장 소각]
[*전문 소각장]
*공용 또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

➔ **렌더링**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설]

추진과정

'19.05.15.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제정 (환경부)

'19.06.18.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성시 피해방지단 간담회 개최

'19.09.17. 파주 돼지농장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위기경보'심각'단계 격상

'19.09.30.~10.15. 멧돼지 사체 매몰의 문제점 도출 (인근지역 민원 발생 등)

'19.10.16. ASF 발생 외 지역의 야생멧돼지(바이러스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 사체처리 방법으로 랜더링 추가 건의 (안성시→경기도→환경부)

'19.10.22. ASF 대응 멧돼지 사체처리 요령 의견 조회 (환경부)
→ 랜더링 처리방법 추가에 따른 전국 지자체 의견 조회

'19.10.22. 안성시 ASF 대응 긴급 예비비 편성 (228,940천원)

'19.10.23. 냉동컨테이너 설치계약 체결

'19.10.23. 야생멧돼지 이송 및 보관용 이중 코팅마대 제작

'19.10.26. 냉동컨테이너 설치 완료, 멧돼지 사체 냉동보관

'19.11.07. ASF 대응 멧돼지 사체처리 방안 마련 통보 (환경부)
→ 사체 랜더링 처리방법 추가 (긴급공문 발송)

'19.11.11. 안성시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

'20.10.2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개정 (환경부)
→ ASF 대응 멧돼지 사체 랜더링 처리방법 추가

1 사체 이송 (방수코팅마대)

- 멧돼지 사체보관전용 방수코팅 마대 제작, 사체 이송
- 마대 이송 전, 중, 후 일체 소독 실시

2 냉동 컨테이너 보관 (급냉보관)

- 별도 방역 및 소독시설 운영
- −20℃이하로 사체 보관
- 일정량 보관 후 랜더링 처리 업체로 사체 이송
  ➜ ASF 음성판정 확인 후

3 랜더링 처리 (고온멸균)

- 동물사체 종합재활용 업체 이송 및 랜더링 처리
- 고온멸균(170~180℃) 후 잔재물 폐기처리

개선효과

● 전국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현황

2019년

10.15.~12.31.
(ASF 발생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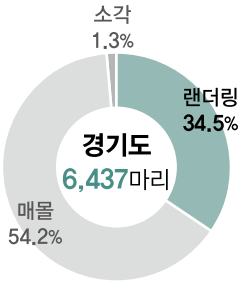

전국 49,456마리

2020년

01.0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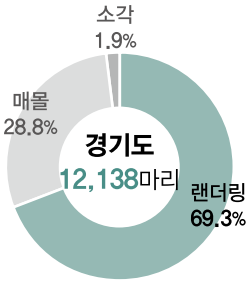

전국 97,045마리

2021년

01.01.~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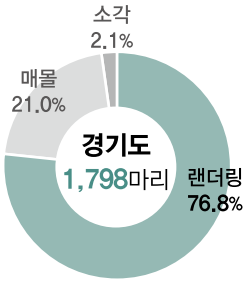

전국 미집계

합계

ASF 발생 기간
(2019.10.15~2021.03.)

경기도 20,373마리
전국 146,501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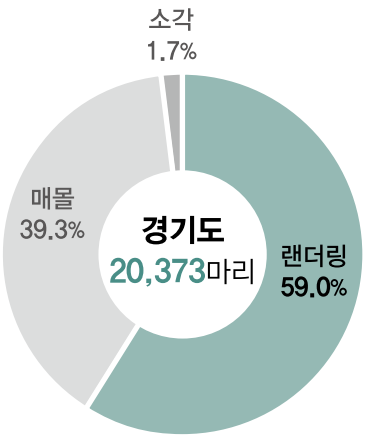

- 사체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미관 저해, 침출수 등 환경오염 발생 원천 차단
- 안정적인 사체처리로 인한 관리 예산 및 행정인력 절감
  - 매몰지 설치 후 향후 사후관리 예산을 산정할 경우, 최소 약 1,000억원 예산 절감
  - 매몰장소 검토, 소유주 동의, 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인 매몰지 관리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기피시설 발생으로 인한 생활민원 발본색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성시 피해방지단 간담회

2021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수상사진

Interview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 관련 친환경적인 동물사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다.

안성시 환경과 **하정호** 031-678-2615

2010년 12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안성시에서만 가축 211만두가 살처분되고, 가축매몰지 216개가 조성되어 수년동안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고통받던 시민들을 생각하면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19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구제역이나 AI를 통해 축사 주변을 방역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업무였습니다.

안성시에서는 ASF 발생 외 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체까지도 현장 매몰처리될 경우 환경오염문제와 관리인력 소요, 생활민원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빠르게 랜더링 방식을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마침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체 보관 냉동창고 등 기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고라니, 비둘기 등 폐사체의 경우에도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하여 야생동물 폐사체가 산속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 등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로 인해 상위 지침이 바뀌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업무추진에 보람을 느끼고, 공직생활도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며 시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성맞춤형 정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공공 공사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확인 규정 신설

추진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 031-8008-5892

개선배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통하여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였음.
- 다만, 해당 규정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한다'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등 일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은바, 보호 받지 못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도적 보호 장치 안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피해사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보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만 적용되므로,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발생 시 발주청에서 해당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통하여 간접노무비 지급 확인 명확화

개선내용

개선전

➔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한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발주청에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

개선후

➔ 직접노무비 대상 외에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확인 규정 신설

- 국민신문고 내 공무원제안 제도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일부 근로자를 제도적 보호 안으로 편입시킴.

추진과정

'20.10.17. 중앙기관(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제안 실시
– 「계약 집행기준」 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지급 대상을 별도 규정하지 않거나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20.11.16. 행정안전부 제안 채택 통보
–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상반기 「계약 집행기준」 개정 예정 안내

'21.05.20. 경기도에 공무원 제안 실시
–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 개정 또는 입찰공고 시 명기를 통하여 선제적 실시 제안

'21.06.04. 경기도 제안 불채택 통보
– 현행법제도 취지와 목적에 위배 및 제도 확대 불필요 판단하여 불채택

'21.06.14. 불채택 제안 재심사 요청
– 현행 제도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한바,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21.07.06. 경기도 제안 불채택(비제안 처리) 통보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진행 중임이 확인되어 비제안 처리

'21.09.06.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1.09.13. 시행)

'21.10.18. 행정안전부 제안 완전 실시 결과 통보
– 간접노무비 지급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 가능토록 개정 및 시행 결과 통보

개선효과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하여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제도 취지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었던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04 道, 설계도서 지원으로 공사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공동주택 보수공사, 언제까지 시공업체 견적에만 의존해야 할까?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4917

개선배경

- 경기도민 10명중 7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경기도내 입주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5,409단지(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약 80%)로 시설물의 유지 ·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경기도 장기수선공사 현황(한국부동산원 자료)
  – 2018년 : 1,100건, 1,334억원 / 2020년 : 1,768건, 2,109억원

-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검증역량 부족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도장, 방수 등 보수공사 시 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풀려진 견적서("일명" 1식 견적)에 의존하여 관리비의 과다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내용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제도를 활용하여 보수공법 등 공사계획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은 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하면, 공사비와 세부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약식도면을 제공하고 있음.

개선전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수공사 추진 시 관련규정 미흡등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중업체과다 견적서 또는 인근 단지의 유사 공사비 사례를 참고하다 보니 공사비리 등 입주민 피해 발생

개선후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계도서 작성 지원을 통해 (공사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등) 시중업체의 부풀려진 견적 사전 차단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낭비 사례 예방

● 설계도서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설문참여 : 설계도서 지원 50개 단지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 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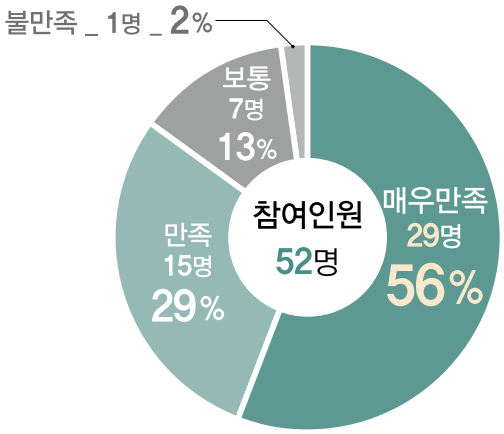

● 설계도서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10월말
지원 단지 수	190	20	6	3	26	41	50	44

추진과정

'15. 6월 道↔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 협업

'19. 4월 설계도서 지원대상 확대 운영

[기존]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500세대이하 공동주택

[확대]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계도서 제공

'20. 1월 업무대행 협약 체결(道↔GH공사), 매년 재계약 체결

개선효과

-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적정 공법에 대한 세부공정별 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산정하므로,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의 품질확보 가능
- 공동주택 설계도서 지원 내용을 공유하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단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내용 공유
- 단순 보수공사(도장,방수 등)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직접 공사비 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제작 추진('22년 시행)

경기도 공식 블로그 운영(매월 업데이트)

설계도서 지원 현장방문

05 서민층의 무거운 이자부담을 낮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

추진부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031-8008-5060

개선배경

- 대부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 ·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 고도성장기인 '70년대 최고이자율(25%)과 비교할 때, 현재의 대부업 최고이자율(24%)은 저성장 · 저금리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높음

[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 연 100분의 24, 민법 제379조 연 5분, 상법 제54조 연 6분

※ 대부업법 이자율 관련 규정(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층 이자 부담을 완화**

개선내용

개선전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규정

개선후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 경기도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건의

추진과정

'20.06.05.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금융위원회)
'20.07.09.	국무총리 주재 현장간담회시 건의
'20.07.28.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회의시 건의
'20.08.07.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및 국회의원 대상 도지사 서한문 전달
'20.11.02.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건의
'21.03.30.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07.07.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개선효과

-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운 저소득 ·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1. 7. 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

보도자료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가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11.16 jeong@yna.co.kr

이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자율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로,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화폐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 원리상 국가 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경기일보 2020년 11월 17일 (화)
종합 03면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소득·서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가량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31만6천명(2조원)의 경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 3만9천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순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당정 결정에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금융정책이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면서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이 돌지 않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며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이광희기자

당정, 시행령 개정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2천700억 확대
李 지사 "인하 환영,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공공행정

01 110년 일재잔재 청산! 문화유산의 잘못된 토지정보 바로잡기

02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길 열린다

03 공동주택의 불필요한 입찰절차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

04 노후주거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해법을 찾다

0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

06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110년 일제잔재 청산! 문화유산의 잘못된 토지정보 바로잡기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

추진부서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 031-590-3956

개선배경

- 토지조사사업(1910~1918) 당시 우리 문화유산은 과세 목적과 역사 인식 부족으로 일제에 의하여 일반묘, 일반건축물과 같이 '묘지'와 '대'로 토지대장 상 등록되었음
  -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주변 토지와 수행공간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토지를 '임야' 또는 '전' 등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이용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각종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 호소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 ·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 사례]

남양주시에서 유일하게 명승지로 지정된 수종사는 부도 사리장엄구, 팔각오층석탑 등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로서, 경내 수행공간 등으로 이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및 증축 부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원상복구)처분으로 전통사찰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 관련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21조, 「농지법」제12조

☞ 잘못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개선내용

개선전

사적 제356호 순강원 : 임야, 대, 묘지
사적 제360호 휘경원 : 임양, 묘지
사적 제365호 성 묘 : 묘지
사적 제366호 안빈묘 : 묘지
사적 제197호 광 릉 : 묘지, 도로, 임야 등
사적 제207호 홍릉 · 유릉 : 임야, 묘지, 대, 구거 등
사적 제209호 사 릉 : 묘지, 임야, 구거 등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 : 대, 임야, 묘지
사적 제367호 영빈묘 : 묘지, 임야, 전

→

개선후

사적 제356호 순강원 : 사적지
사적 제360호 휘경원 : 사적지
사적 제365호 성 묘 : 사적지
사적 제366호 안빈묘 : 사적지
사적 제197호 광 릉 : 사적지
사적 제207호 홍릉 · 유릉 : 사적지
사적 제209호 사 릉 : 사적지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 : 사적지
사적 제367호 영빈묘 : 사적지

- 토지정보가 "임야" 및 "묘지"로 등록되었던 홍유릉 외 문화재 8개소 "사적지"로 지목변경 완료
- 국가지정문화재 및 명승지인 수종사 외 5개소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완료

추진과정

「남양주시 문화재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지목변경 지침 수립

- 토지 · 건축물대장 및 각종 공부 파악
- 문화재청 보유 문화재 관련 자료 의뢰
- 우리기술을 이용 지표면상 GPS좌표 도출 후 드론 촬영 영상 맵핑 작업을 통한 건축물 배치 및 면적 등 현황 조사 및 기록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관련법 시행 이전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관련법령 검토

- 인 · 허가 여부 검토 및 과거 자료 찾기
-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필요한 경우 인 ·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

토지이동 정리

- 토지소유자(관리부서)의 토지이동 신청 안내
- 토지이동 신청 서류 검토 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처리

개선효과

- 비예산 우리기술을 활용 일제가 시행한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및 토지행정의 신뢰성 향상
- 적극행정을 통하여 문화재청 및 종교단체의 문화재 보존 · 관리 어려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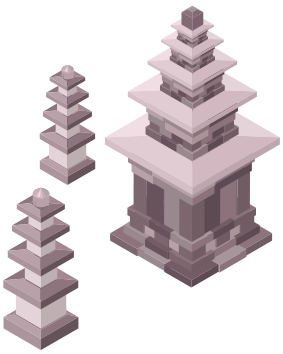

보도자료

남양주시 문화유산 '지목변경'...전국 최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23:59 수정 2020.10.13 00:02

드론으로 촬영한 국가지정문화재 홍유릉(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토지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국가지정문화재 토지정보는 일본제국이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해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돼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통사찰은 국내 고유 전통 및 사찰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인데도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 등으로 등록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전통사찰은 각종 규제와 위반사항 등으로 시달림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변경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홍유릉 등 9개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각각 변경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전통사찰 수종사(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제 이용현황 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법 저촉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해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최대집 토지정보과장은 12일 "우리 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사, 적용했다"며 "이번 적극행정 성과는 국가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자치단체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 9월 '전통사찰 규제 해소와 적극행정'을 높이 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책임자에게는 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보도자료

경기일보 2021.12.22(수)

잘못된 문화유산 바로잡기 시동...
남양주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추진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 입력 2016.11.28 오후 7:25 | 댓글 0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토지정보 수두룩

진접읍에 위치한 봉선사

남양주시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시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20여 개의 문화유산이 있지만, 대부분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임야 등으로 지정돼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법 규제로 이어지며 보존과 관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에 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관한 지목변경 처리 업무지침'을 수립,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실제 이용현황과 다른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Interview

문화유산 토지정보의 현실화를 기획하다 - 하늘의 눈으로 지적 재정비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양기영** 031-590-7311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사업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신 많은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경우 우리 고유의 전통과 사찰 양식에 따라 일수문 안부터 경내지임에도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실 지목에 맞춘 토지정보 변경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실지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토지대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지적행정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규제개혁은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합리적 법리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과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이 개선·해결될 때마다 공직생활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규제혁신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규제개혁 꿈꾸며 적극행정을 위하여 끝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상의 기쁨! 모두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02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길 열린다.

경기도 제도개선 노력으로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부서 경기도 철도운영과 ☎ 031-8030-4893

개선배경

- 경기도민에게 승용차-철도 간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도비 지원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역사로 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일반철도역 126개소(52%)까지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당초 도내 243개의 철도역 중 광역철도역 79개소(32%)만 지원대상

- 시 · 군 및 도의회에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 수요에 따른 도비 지원 방안 마련 강구

개선내용

개선전

➜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에 대해 도비 지원 가능

개선후

➜ 광역철도역 및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에 대해 도비 지원 가능

- 2020. 12월 법령 개정 완료 조문

구 분	법 률 개 정(안)
조문	**제11조의6 제3항 제4호 신설**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외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 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 중 시 ·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 · 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추진과정

'19. 1월	「광역교통법」 개정안 마련, 개정 필요성 및 추진계획 등 보고 – 모든 철도역으로 지원범위 확대 추진(일반철도역, 도시철도역)
'19. 2월	임종성 국회의원실 및 민주당 정책실 방문 입법 발의 건의
'19. 2월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방문, 법률 개정 설명 및 협조 요청
'19. 3월	임종성 국회의원 입법 발의
'19. 6월	법률 개정안 관련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 협의
'19. 7월	대광위 실무협의(경기도 안에 동의) – 지원 확대 범위 조정(일반철도역, 도시철도역)
'19. 8월	임종성 국회의원실 및 국토위 입법조사관실 방문 협의결과 설명
'20.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
'20. 6월	조응천 국회의원에 「광역교통법」 개정안 자료 제출
'20. 7월	조응천 국회의원 입법 발의
'20. 8~11월	대광위 및 국회 입법조사관에 자료 제출 및 유선 업무 협의
'20. 9월	「광역교통법」 개정 검토의견 공문 발송(道 ⇒ 대광위) –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도로분야 각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 범위 내 지원이 아닌 합 20%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검토 요청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각 10% 범위가 아닌 합 20% 법위 변경 요청
'20. 12. 1.	법률 개정안 본회의 가결('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 –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에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 범위 내 지원 가능

개선효과

- 경기도 내 126곳의 일반철도역까지 환승주차장 지원 범위 확대(84%)

구 분	계	광역철도역	일반철도역	도시철도역	비 고
경기도 내 철도역 수 (개소)	243	79	126	38	'21.11. 기준

- 전국 모든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을 시 · 도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일반철도역이 대부분인 실정
- 광역교통 수요가 많은 일반철도 역사 인근의 주차장 확보 및 확충 수요에 대한 해결책 제시

03 공동주택의 불필요한 입찰절차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

최초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재입찰 대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3464

개선배경

- 현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 용역 사업자를 선정 시 발주자(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차순위자 선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 따라 재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
- 재입찰공고 등의 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 공사 사업자 선정 시기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용역 ·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개선내용

-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재입찰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건의(도→국토부)

※ '21년 하반기 개정 예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21.10.14 / 국토부→지자체)

개선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와 제29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 무효로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차순위 업체에 선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으므로 재입찰을 통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

개선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와 제29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결과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과정

'19.02.26 / '19.03.08 / '20.07.22 차순위 선정 제도개선 건의(도→국토부)

'21.09.24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관련 관계자 회의 참석해 차순위 선정 반영 제도개선 적극 요청

'21.10.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실시(국토부→지자체)
※ 일부개정안 내용 상 2순위 낙찰자 선정 근거 조항 포함(제21조, 제29조)

법령 개정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21.10.14. 국토부 의견조회)

현 행	개 정 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체결) ③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9조(계약체결)** ③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선효과

- 재입찰 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에 따라 동일한 업무의 반복 없이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관리환경 조성에 기여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 공사 사업자 선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관리사무소 운영 및 용역 · 공사를 적기 시행할 수 있어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기여

04 노후주거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해법을 찾다.

〔전국최초〕규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식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부서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 031-729-4513

개선배경

-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도심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급증하기 시작되었으나, 성남시 노후주택 밀집지역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6미터 이하 도로로 차량 교행조차 어려운 상황임.
- 연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십개의 가로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법령상 모호한 규정으로 잔여지가 생겨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민 발생함.
- 법령 및 조례상 지원에 대한 항목만 있고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개선내용

개선전
➜ 1만㎡이상 가로구역은 잔여지가 발생하고 연접개발 제한이 없음

개선후
➜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잔여지 발생을 막고 계획적 개발 유도

개선전
➜ 기존 비좁은 골목길에 아파트만 신축되어 기반시설 부족

개선후
➜ 폭3미터 이상 보도를 2면 이상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개선전
➜ 인센티브 없음

개선후
➜ 보도 설치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성 향상 (조례개정)

개선전
➜ 지원을 위한 재원 규정이 없음

개선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보도 설치비 100%, 법정 주차대수 초과 주차 1대당 200만원 보조로 사업추진 부담 완화(조례개정)

개선전
➜ 전담조직 없음

개선후
➜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담팀 신설

도로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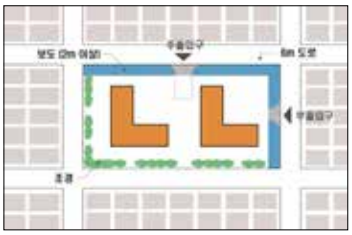

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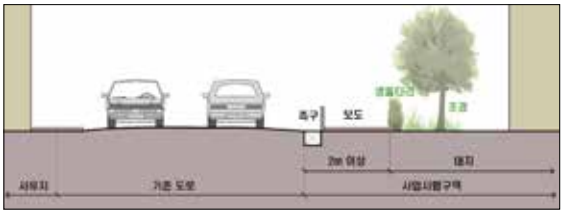

도로 단면도

추진과정

'20.02월~'20.10월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6회

'20.11월~'21.04월 타시군 사례 조사

'21.01월~'21.06월 관련부서 협의

'19.10월~'21.05월 가로주택정비TF단(8회) 및 전문가 자문단(3회) 회의

'21.06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공고

'21.09월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1.10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개정

'21.10월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 난개발방지 특별상 수상

개선효과

-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고 가로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부여 가능
- 보도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가능
-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법정 주차대수 초과 주차설치비 지원 및 용적률 완화로 주민분담금 감소
- 전담팀 운영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원활히 대응

현황

현행법 적용시

가이드라인 적용시

0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으로 입주 소요기간 단축

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3461

개선배경

- 매입임대주택(청년형) 입주자 모집 시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됨
  -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까지 총 4개월(모집공고 3달, 계약체결 1달 등) 이상 소요

※ 신속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입주자 선정 절차(기간 단축) 개선 필요

[매입임대주택 개요(청년형)]

사업목적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공급

· 공 급 량 : '21년 195호 ※ GH공사를 통한 사업 시행

· 입주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대상

※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1순위 外) 본인 및 부모 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개선내용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입주 소요기간 단축(4개월→2개월)
  - (기존) 입주자 모집 시 1~3순위 동시 발표하여, 신청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불필요한 소득 · 자산 심사를 실시하며, 공가 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
  - (변경) 소득 · 자산 검증이 생략가능한 1순위자를 우선 발표하여, ① 도민 편의 증진, ②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③ 공가 관리를 위한 예산 절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으로 주거복지 분야 규제 합리화]

기존 : 1~3순위 동시 발표(3달 소요) ➔ **개선** : 1순위 선발표로 발표 기간 단축(1달 소요)
①적기 입주 통한 도민 편의⬆ + ②불필요한 행정절차⬇ + ③공실 관리비 절감으로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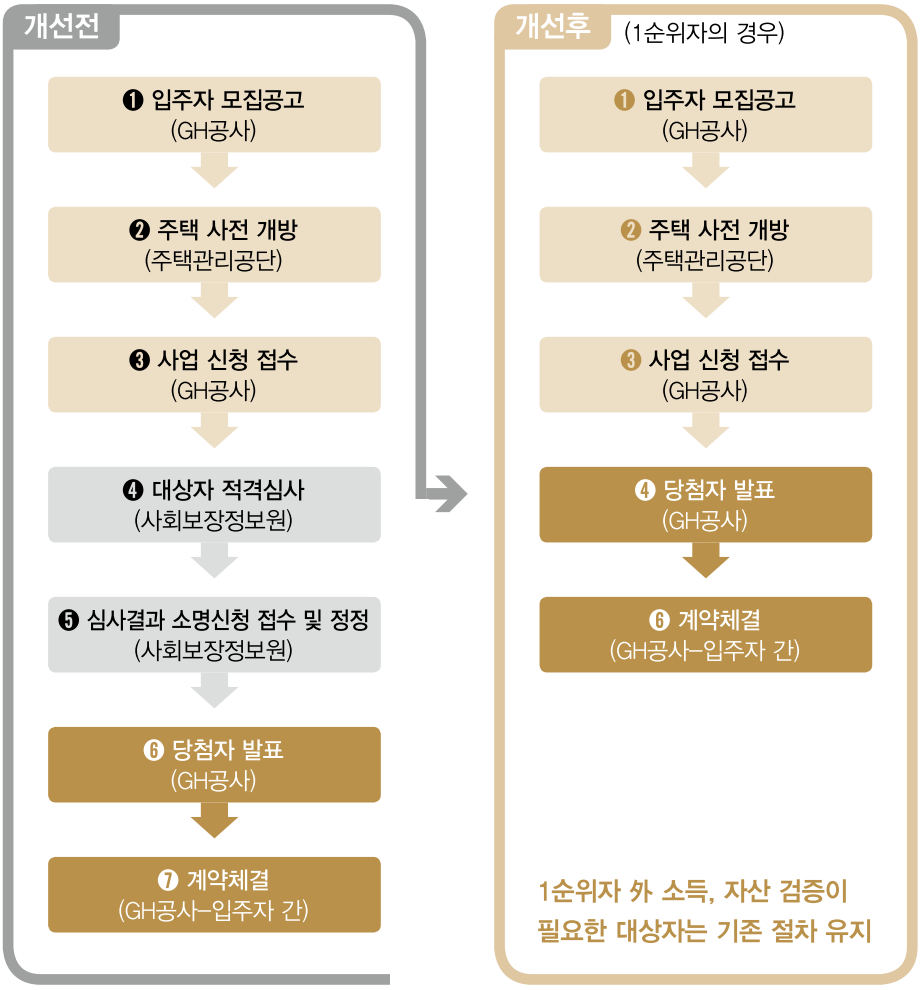

개선효과

- (도민편의 증진) 1순위를 우선 발표하여 주택공급이 시급한 대상자 적기 입주 가능
- (행정절차 최소화) 소득 · 자산조회 절차 생략으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예산 절감) 기존방식 대비 공가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비용 축소

청년 매입임대 주택 외관 및 내부 현장

06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다

코로나 확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제안한 온라인총회 근거 법령 신설

추진부서 경기도 도시재생과 ☎ 031-8008-5514

개선배경

-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총회에게 의결해야 하고, 서면 결의도 가능하지만 전체 조합원의 10%(주요 사안은 20%) 직접 참석해야 법적 효력이 있음
- 그러나, 2020년 초부터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로 총회개최가 어려워지고, 집회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주민갈등이 심한 상황이었음
  - 총회를 적기에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함
  -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경우도 많고, 분양대금 납부 전까지는 모두 대출로 운영하므로, 사업기간 지연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 우려

[피해사례]

전국 대부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은 사업진행을 위해 반드시 총회개최가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총회 반대 민원과 정족수 미달 우려로 어려움을 겪음

- 정족수 미달로 총회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함

※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 ~ 제8항

☞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법이 개정되어 감염병 확산 우려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총회 개최와 참석이 가능해짐**

개선내용

개선전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 직접 출석하여야 함
-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변경은 100분의 20이상 직접 출석하여야 함

개선후

-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발생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 (2021.11.11. 시행)

-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개발 · 재건축 총회 개최의 어려움 해결하고자 온라인 총회 신설을 제안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이 개정됨

추진과정

'20.04.01.	온라인 총회 근거 신설 건의(경기도 → 국토해양부)
'20.06.~07월	도시주택실이 주관하여 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법현안 제출
'20.09.10.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 대표발의
'21.08.10.	법 개정 공포('21.11.11 시행)

개선효과

- 감염병 확산 걱정없이 총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음
  -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총회 참석 가능
  - 총회 개최에 대한 집단민원 감소로 조합 집행부와 행정관청 업무추진 용이
- 총회개최 지연을 막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 총회개최비용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부담금 감소
  - 직접 참석인원이 줄어들어 회의실 대관비용 감소하고 회의준비가 쉬워짐
  - 사업기간 단축으로 막대한 사업비의 이자 감소
- 온라인 참석을 선호하는 조합원은 장소의 제약없이 편안하게 총회 참석 가능
  - 현재 상당수의 조합원은 직접 참석대신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2021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지 경기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

편집제작 규제개혁담당관

GO GREAT, GYEONGGI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